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74호 2024년 12월 20일(금)

공 고

- 공인 등록사항 공고 2

기 타

-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 5

발행 : 시 민 소 통 과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등록 사유

— 중간수납용 보통예금계좌 운영

2. 공인명 및 인영 : 20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최초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감사법무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공원녹지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복지정책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민원토지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건축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	최초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교통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농업기술센터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보건위생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건강증진과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립박물관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환경자원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도서체육센터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영랑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동명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금호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	최초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교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노학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조양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청호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등록	속초시대포동 수입금출납원인		1.8×1.8cm	2024. 12. 20.	

어린이 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

속초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(확대)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지정(확대)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17일

속 초 시 장

1. 목 적: 속초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(확대)
2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okcho.go.kr>)게시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4. 12. 17. ~ 2025. 1. 10.
4. 지정(확대)위치 : 붙임 위치도 참조

시 설 명	소 재 지	지정 구간	지정(확대) 사유
소야초등학교	속초시 노학동 1-36	(당초)L=430m (변경)L=600m	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따른 추가 지정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별첨)를 속초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,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- 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3-639-2485)
- 라. 보내실 곳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
- 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019)
- 바.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【붙임】

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치

■ 시설 명: 소야초등학교 / 노학동 1-36

당초(현재)



변경(예정)



<별첨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